##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696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 박주민·채현일·정진욱

박지원 • 박희승 • 강준현

이광희 · 이용우 · 이재관

문금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COFIX 등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가감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회 고시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은행 경영공 시 및 대출가산금리 등 비교공시 운영기준」에 따라 매월 공시되고 있음.

그러나 공시항목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및 가감조정금리만으로 구 분되어 차주는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세부항목 등 구체적인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 알 수 없는 비대칭 정보 상황에 있음.

반면 주요 은행들은 대출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반대의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대출한도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하여 대출금리 인상만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여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이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등).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제30조의3으로 하고,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2(대출금리의 산정 및 공시) ①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계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반영하여 금리(이하 이 조에서 "대출금리"라 한다)를 산정하여야한다.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금리 중 은행이 금 리 산정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지표금리(이하 "기준금리"라 한다)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은행이 기준금리에 가감하는 금리 (이하 "가산금리"라 한다)
    - 가. 차주의 신용상태
    - 나. 은행이 기대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하는 수익률
    - 다. 출연료 및 세금 등 은행이 법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 라. 대출관리, 자금조달 비용 등 원가배분방식을 적용해 산정하는 비용
    - 마. 그 밖에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은행은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및 그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매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6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5호의3 및 제5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0조의2제2항을"을 "제30조의3제2항을"로 한다.

5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lt;신 설&gt;</u>	제30조의2(대출금리의 산정 및 공시) ①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계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반영하여 금리 (이하 이 조에서 "대출금리"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금리 중으행이 금리 산정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지표금리(이하 "기준금리"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은행이 기준금리에 가감하는 금리(이하 "가산금리"라
	한다)  가. 차주의 신용상태  나. 은행이 기대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하는 수익률  다. 출연료 및 세금 등 은행 이 법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라. 대출관리, 자금조달 비용

<u>제30조의2</u>(금리인하 요구) (생략)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1. ~ 5. (생 략) <신 설> 등 원가배분방식을 적용해 산정하는 비용

마. 그 밖에 은행이 가산금리 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은행은 대출금리를 기준금 리와 가산금리 및 그 세부항목 으로 구분하여 매월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 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대하 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u>제30조의3</u>(금리인하 요구) (현행 제30조의2와 같음)

제69조(과태료) ① -----

\_\_\_\_\_

\_\_\_\_\_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u>5의2.·5의3.</u> (생략)

- 6. ~ 11. (생략)
- ② · ③ (생 략)
- 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 ⑥ (생 략)

<u>0</u>	해
7	-~

5의3.·5의4. (현행 제5호의2 및 제5호의3과 같음)

- 6. ~ 11.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u>제30조의3제2항을</u>-----
- ⑤ · ⑥ (현행과 같음)